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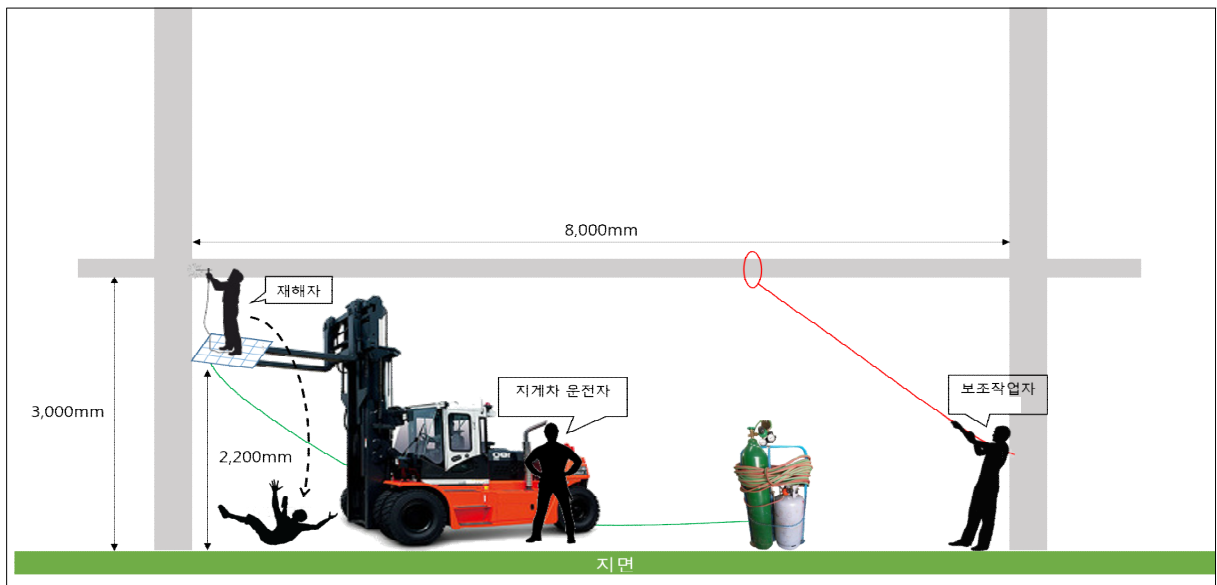


재 해 개 요

2016.05.10.(화) 15:00경 ○○시 소재 사업장에서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올려 놓고 그 위에 올라가 포크를 상승시킨 후 공장 기둥에 설치된 C형강을 산소절단기로 해체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져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2016.05.19.(목) 사망한 재해임



사 고 사 진



[사진] 재해발생 상황



재 해 발 생 상 황

● 작업현장 상황

- 해체 대상인 C형강은 지면에서 약 3m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게차 포크를 약 2.2m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함
- 팔레트는 철재 그레이팅을 개조하여 제작하였으나 떨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, 지게차는 시동을 켜둔 상태로 진동에 의해 팔레트가 흔들렸을 것으로 추정됨

● 재해자의 행동상황

-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 포크에 올려진 팔레트에 올라가 2m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져 사망함



재 해 발 생 원 인

- 떨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킴
-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함
- 높이 2m이상의 떨어짐 위험장소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함



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

-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 용도로 사용하고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조치가 완비된 이동식 비계,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
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바르게 착용하고, 높이 2m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하여야 함